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

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1. 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1.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및 의결(대안반영 폐

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도읍의원)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안 제8조의4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에게 재판기록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와 같은 간접적·우회적인 수단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

와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그 취지가 인정됨.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무제한적인 열람·등사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인 점,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현저한 또는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음.

안 제8조의3은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기록과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안 제8조의5는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7조)와 그 체계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